

의안 번호	17
----------	----

2026. 7.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된 일부 규정 중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정 이후 장기간 경과한 이 조례의 용어·명칭 및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목적규정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한 부분을 삭제함.
(안 제1조)
- 나.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 다.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등에 관하여 법제처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라.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하나의 표로 규정함.(제7조, 별표 2 신설)
- 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가 아닌 위탁계약서로 정하거나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되므로,
이러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제16조)

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당연히 따르거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제18조)

사.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중 직접적인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만
남기는 것으로 정리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신·구별표대비표: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8조, 제59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4조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19조

6) 「지방자치법」 제29조

7)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바. 기 타

1) 입법예고(2026. 4. 15.~5. 6.)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시에”를 “위하여”로, “운영”을 “그 운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창원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7(봉곡동)
2. 마산장애인복지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신월동)
3. 진해장애인복지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장애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사회심리재활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2. 장애인의 의료재활·교육재활·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지원

3. 재가(在家) 장애인의 복지 지원

4. 장애인의 스포츠 및 여가활동 지원

5.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인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면제) 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이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주 간 보호센터	1개월	100,000	
강 당	1일	40,000	냉난방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징수
식 당	1일	40,000	
체 육 관	1일	50,000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장애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의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시장에 알리는 경우	가. 이용일 전일까지 알리는 경우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이용일 이후에 알리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들의</u>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 <u>장애인복지법</u> 」 제58조에 따라 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장애인</u> ----- ----- ----- ----- <u>위하여</u> ----- ----- ----- <u>그 운영</u> ----- -----.
제2조(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u><삭 제></u>
1. 복지관 창원관: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7(봉곡동)	
2. 복지관 마산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신월동)	
3. 복지관 진해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u><신 설></u>	제3조(창원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u>장애인복지법</u> 」 제59조 제1항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주간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5.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7(봉곡동)

2. 마산장애인복지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신월동)

3. 진해장애인복지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4조(기능) 장애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사회심리재활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2. 장애인의 의료재활·교육재활·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지원
3. 재가(在家) 장애인의 복지 지원
4. 장애인의 스포츠 및 여가활동 지원
5.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

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장애인으로서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인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면제) 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8조(운영비)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설치 및 운영비 등을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전체 운영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수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종합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삭 제>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이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삭 제>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轉貸)하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해서는 변

<삭 제>

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 및 행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에서 시장의

<삭 제>

<삭 제>

사전승인을 받아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법
령 및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10월말까지, 분기별 정
산서는 다음달 5일, 연도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6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2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개정 2018. 3. 30.>					■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6. . . .>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제6조 관련)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기준	이용료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일반	비고	구분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각종 치료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하는 의료보 험 진료수가 및 약가	무 료	전 액		<삭 제>			
주간 보호센터	월	무 료	100,000원		주간 보호센터	1개월	100,000	
강 당	1일	무 료	40,000원	냉난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징수	강 당	1일	40,000	냉난방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징수
식 당	1일	무 료	40,000원	〃	식 당	1일	40,000	
체 육 관	1일	무 료	50,000원	〃	체 육 관	1일	50,000	
기타사업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삭 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11.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장애인복지법」
마. ~ 고. (생략)
2. 3.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7. (생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

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관 창원관: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7(봉곡동)
2. 복지관 마산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신월동)
3. 복지관 진해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주간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5.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장애인으로서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8조(운영비)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설치 및 운영비 등을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전체 운영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수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종합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轉貸)하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 및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10월말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다음달 5일, 연도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

[별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 반	
각 종 치료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무 료	전 액	
주 간 보호센터	월	무 료	100,000원	
강 당	1일	무 료	40,000원	냉난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징수
식 당	1일	무 료	40,000원	"
체 육 관	1일	무 료	50,000원	"
기타사업	자체운영규정에 따름			